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95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이동근 (000000-000000), 농업
주거 김해시 00000000 000, 0000(000, 00000 000)
등록기준지 김해시 000 000
항 소 인 검사
검 사 노00(기소), 김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00(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8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인접 토지에 둘러싸인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단속 공무원의 증언 등에 비추어 불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에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미터 이상의 성토 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신설·시행되기 전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었던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 이후 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한 높이가 2m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한 진OO은 '3.2m를 성토하였다고 한 것은 이 사

건 토지가 성토 전 주변 토지와 높이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한 것인데, 인접토지들의 높이가 어느 정도(10~20cm) 차이는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 측량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시행령에서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한 부분은 2019. 8. 6. 신설(3개월 후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0. 4.경 높이 약 3.2m로 성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성토한 토지 중 1.2m가량은 2020. 4.경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3년 이상 이전인 2016. 12.경 성토한 것이고, 그 시간적 간격도 매우 크므로, 위 공소사실은 이러한 면에서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00 _____

 판사 장00 _____

 판사 윤00 _____